

|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20895    |
| 의 퇴 인  | 황운하의원      |
| 회 답 일  | 2026.10.1. |
| 추 계 번호 | 26B4369    |

#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2조(정의)                  |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(제1항6의 2호 신설)<br>6의2. “노대(露臺)”란 2층 이상 건축물의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를 말한다.   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49조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) 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(露臺)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.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(제5항 신설)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근거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2조(정의)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첨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–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|
| 2  | 안 제49조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노대(露臺)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<sup>1)</sup>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(露臺)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.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임
 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(露臺)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.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 - 그러나 높이 1.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, 건축물의 용도·규모·시설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, 현시점에서 난간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알 수 없고,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게 될 난간의 길이, 난간의 재질 등이 건축물별로 상이하므로 현시점에서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 - 또한, 개정안의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향후 개정안에 따라 난간 설치가 의무화되는 건축물의 준공시점, 물량 등을 예측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) “노대(露臺)”란 2층 이상 건축물의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뜰 바닥이나 마루를 말한다.

### 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남 희 | 예승우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|
| 남 희 | 02-6788-3737 | nhee@nabo.go.kr |